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4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9월 6일) 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국)

□ 제안이유

-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시민중심의 소통과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,
- 시정연구단, 교육청소년과 신설, 오정레포츠센터 직영 등 신규 사무 발생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사무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: 2,089명 → **2,093명(증 4명)**

- 행정 2, 행정·사회복지 1, 사회복지 1

나.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: 1단 1과 6팀 41명(부서간 조정)

- 시정연구단 신설: 7명

○ 교육청소년과 신설: 13명

○ 팀 단위기구 신설: 6팀 21명

다. 시-구청 간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 조정: 121명(부서간 조정)

○ 건축허가 및 주택정비사무: 25명

○ 위생허가 및 지도관리사무: 31명

○ 도시미관분야(주정차, 광고물, 노점상) 사무: 61명

○ 사용전검사: 1명

○ 시청 민원사무 인력 보강: 3명

라. 신규사무발생 및 사무조정에 따른 정원 재조정: 284명(부서간 조정)

마. 정원조정 현황

○ 기관별 정원조정

구 분	계	집 행 기 관						의회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사업소	구청	동	
현정원	2,089	2,057	768	146	266	484	393	32
조정후	2,093	2,059	714	102	252	598	393	34
증·감	+4	+2	△54	△44	△14	+114	-	+2

○ 종류별 정원조정

구 분		계	일반직 (연구직·지도직 포함)	기능직	별정직,정무직
법 정 기 준	비율	100%	78%이상	20%이내	2%이내
	인원수	2,093	1,632이상	419이내	42이내
현정원		2,089	1,756	323	10
조정후		2,093	1,760	323	10
법정기준대비율		100%	84.1%	15.4%	0.5%

○ 직급별 정원조정

- 일반직(연구직, 지도직 제외)

구 분		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법정 기준	비 율	100%	1%이내	7%이내	24%이내	32%이내	24%이내	12%이상
	인원수	1,750	17이내	123이내	420이내	560이내	420이내	210이상
현 정원		1,746	13	113	399	553	406	262
조정 후		1,750	13	116	407	549	403	262
법정기준 대비비율		100%	0.7%	6.6%	23.2%	31.4%	23.0%	15.1%

- 기능직

구 분		계	6급	7급	8급	9급	10급
법정 기준	비 율	100%	4%이내	14%이내	20%이내	30%이내	32%이상
	인원수	323	13이내	45이내	65이내	97이내	103이상
현정원		323	11	42	63	92	115
조정후		323	12	43	62	91	115
법정기준대비율		100%	3.4%	13.0%	19.4%	28.4%	35.8%

- 연구직, 지도직

구 분		연구직		지도직	
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법정 기준	비 율	3%이내	97%이상	6%이내	94%이상
	인원수		2		8
현정원			2		8
조정후			2		8
법정기준 대 비 율			100%		100%

- 정무직: 1명

• 별정직

구 분		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법정 기준	비 율	100%	7%이내	34%이내	39%이내	18%이내	2%이상
	인원수	9	1	3	3	2	
현 정 원		9	1	3	5		
조 정 후		9	-	3	6		
법정기준대비율		100%		37.5%	62.5%		

□ 예산수반사항: 3억6천9백7십2만8천원 증가

(단위 : 천원)

직급별 총계	소계	일 반 직				
		5급	6급	7급	8급	9급
+4	+4	+3	+8	△4	△3	-
+369,728	+367,037	+201,312	+445,848	△184,288	△95,835	-

소계	기 능 직				소계	별정직	
	6급	7급	8급	9급		5급	7급
-	+1	+1	△1	△1	-	△1	+1
+23,723	+54,566	+49,051	△42,678	△37,216	△21,032	△67,104	+46,072

※ 2010. 직급별 기준(일반직) : 5급 67,104천원, 6급 55,731천원,
7급 46,072천원, 8급 31,945천원,

※ 2010. 직급별 기준(기능직) : 6급 54,566천원, 7급 49,051천원,
8급 42,678천원, 9급 37,216천원

※ 2010. 직급별 기준(별정직) : 5급 67,104천원, 7급 46,072천원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내용과 같음. (병합심사)	

4. 토론요지

- ▶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반토론과 같음
(병합심사)

가. 반대토론

나. 찬성토론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2,089명”을 “2,09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,057명”을 “2,05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32명”을 “34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 계	2,093	2,093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 장	1	1					
일반직 계	1,750	1,750					
2급	1	1					
4급	12	5	1	1	2	3	
5급	116	34	3	10	10	22	37
6급 이하	1,621	1,621					
별정직 계	9	9					
5급상당							
6급상당 이하	9	9					
연구직 계	2	2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2	2					
지도직 계	8	8					
지도관							
지도사	8	8					
기능직 계	323	323					